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등〉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144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시·도분쟁조정협의회 설치	4
2. 시·도지사에게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 부여	13
3. 시·도지사에게 서면실태조사 권한 부여	20
4. 시·도지사에게 고발 요청 권한 부여	23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6. 27.
- (3) 회 부 일 : 2025. 6.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건처리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려 합니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됩니다. 법 위반행위 조사와 시정권고는 공정거래위원회만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조적인 인력 문제 등으로 대규모유통업 분야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규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광역자치단체에 분쟁조정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만 협의회 설치 및 분쟁조정 업무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집중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민원 신청인들의 혼

란과 불편도 큼니다.

이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분쟁조정을 위한 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아울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신청, 위반행위조사, 실태조사, 시정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분쟁조정 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불공정거래의 규제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나. 법 위반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며, 시·도지사가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29조).

다. 시·도지사가 조사 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결과를 송부하도록 함(안 제29조제6항 신설).

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 의무와 그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 등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함(안 제30조).

마. 법 위반 사실이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시·도지사가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의 2 신설).

바. 제재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사. 시·도지사 역시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파급효과, 납품업자등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Ⅲ. 검토의견

1. 시·도분쟁조정협의회 설치

□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분야 분쟁조정협의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0조의2 신설,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20조(<u>분쟁조정협의회</u> 의 설치 및 구성) 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이 조에서 “조정원”이라 한다)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 <u>협의회</u> ”라 한다)를 둔다. ② <u>협의회</u>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⑦ (생략) <u><신설></u>	제20조(<u>조정원</u>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 ----- ----- ----- ----- ----- -----“ <u>조정원 협의회</u> ”----- ② <u>조정원 협의회</u> ----- ----- ③ ~ ⑦ (현행과 같음) <u>제20조의2(시·도 분쟁조정협의회</u> <u>의 설치 및 구성)</u>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 <u>시·도지사</u> ”라 한다)는 특별시

현행	개정안
	·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시·도 분쟁조정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도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대규모유통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납품업자등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 또는 유통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현행	개정안
제21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①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이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납품업자등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즉시 위촉을 해제하	2. <u>판사·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u> 3. <u>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u> 4. <u>그 밖에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⑤ <u>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 ⑥ <u>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u> ⑦ <u>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제4항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제21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 및 시·도지사는----- ----- ----- -----

현행	개정안
여야 한다. 제22조(협의회회의 회의) ① <u>협의회</u>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이 조에서 “전체회의”라 한다)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 대규모유통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 납품업자등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이 조에서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 ⑤ (생략) ⑥ <u>협의회</u>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u>대행한다</u>. ⑦ (생략) 제24조(협의회회의 조정사항) 협의회는 <u>공정거래위원회가</u> 의뢰하거나 분쟁당사자가 신청하는 사항으로서 제5조부터 제15조	-----. 제22조(협의회회의 회의) ① <u>조정원 협의회와 시·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u>-----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u>조정원 협의회</u>----- ----- -----<u>대행하고, 시·도 협의회</u>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u>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 ⑦ (현행과 같음) 제24조(협의회회의 조정사항) ----- <u>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u>-----

현행	개정안
까지,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제25조(조정신청 등) ① (생략) ② <u>공정거래위원회는</u>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와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u><신설></u> ③·④ (생략) ⑤ 제4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조정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 -----. 제25조(조정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u>----- ----- -----. ③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중 납품업자등이 선택한 협의회에서 이를 담당한다. 1. <u>조정원 협의회</u> 2. <u>납품업자등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u> 3. <u>대규모유통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u>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⑥ <u>제5항</u>----- ----- ----- ----- -----.

현행	개정안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2. (생략) 제26조(조정 등) ① ~ ⑥ (생략) ⑦ 협의회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끝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공정거래위원회</u>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생략) 제27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② (생략) ③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u>공정거래위원회</u>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28조(협회의의 조직·운영 등)	⑦ 제5항----- ----- ----- -----. 1. 2. (현행과 같음) 제26조(조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u>공정거래위원회</u> 또는 시·도지사에게----- ----- ----- ----- -----. ⑧ (현행과 같음) 제27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공정거래위원회</u> 또는 시·도사에게-----. ④·⑤ (현행과 같음) 제28조(협회의의 조직·운영 등)

현행	개정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조직, 운영,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1조부터----- ----- ----- -----.

□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그러나 현재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원에만 설치되어 있어 지방 거주자들의 적극적 이용에 한계가 있고, 유사한 거래 분야인 가맹사업거래와 대리점거래의 경우 시·도에 설치된 협의회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어 납품업체 등과 대규모유통업자에게도 동일한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른 경우 분쟁조정을 이용하려는 당사자들의 편의를

1) 제20조(분쟁조정협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이 조에서 “조정원”이라 한다)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돕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안 제20조의2제1항에서는 협의회 설치의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분쟁조정 신청이 적거나 전문인력 등이 미비한 경우 시·도 협의회의 의무 설치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법률상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업종별 거래 관행, 시장 상황 등의 전문적인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개별 시·도가 각각 협의회를 운영하게 되면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상이한 조정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분쟁조정제도의 공정성·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한편, 개정안에 따른 경우 분쟁당사자는 조정원 협의회나 분쟁당사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협의회에 선택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각 협의회가 표준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운영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각 협의회의 임의적 운영에 따른 분쟁당사자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운영지침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거래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²⁾.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분야 분쟁조정의 수요 자체가 적고³⁾, 대규모유통업자의 88.2%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둘 실익이 낮다는 입장임.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최근 3년간 분쟁조정 신청건수: 2022년 28건, 2023년 29건, 2024년 29건

2. 시·도지사에게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 부여

□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장 제목, 제29조, 제33조 및 제3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장 <u>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u> 등	제4장 <u>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의 사건처리절차</u> 등
제29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u>공정거래위원회</u> 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u>공정거래위원회</u>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 ----- ----- <u>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u> 에게-----. ----- <u>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u> 는----- ----- ----- -----.
② <u>공정거래위원회</u> 는 이 법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u>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u> 는----- ----- ----- -----.
③ <u>공정거래위원회</u> 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	③ <u>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u> 는----- -----

현행	개정안
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u>공정거래위원회가</u>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31조 본문에 따른 처분대상의 제한 기한을 경과하여 <u>공정거래위원회가</u>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u>공정거래위원회가</u>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 ----- ----- ----- ----- ④ -----<u>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u>----- ----- ----- ----- ----- ----- -----<u>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u>----- ----- -----<u>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u>----- ----- ----- ⑤ <u>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조사의 중지를</u>

현행	개정안
<신설> 제33조(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u>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u> ②·③ (생략) <신설>	<u>요청할 수 있으며, 중지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u> ⑥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u>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u> 제33조(시정권고) ① ----- ----- ----- ----- ----- ----- -----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시·도지사의 시정권고) ① 시·도지사는 이 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해당 권

현행	개정안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②(생략) ③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u>공정거래위원회의</u> 조사·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조 제6항 및 제9항,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u>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규모유통업자는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권고를 수락하였을 때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에 관하여는 제26조제8항 및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도지사”로 본다.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②(현행과 같음) ③ ----- ----<u>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u>----- ----- ----- ----- -----.

현행	개정안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u>공정거래위원회의</u> 위원 및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준용한다.	⑤ ----- ----- <u>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의</u> ----- ----- ----- ----- -----.

□ 현행법은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거나,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⁴⁾.

- 4) 제29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31조 본문에 따른 처분 대상의 제한 기한을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규모유통업자는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권고를 수락하였을 때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개정안은 법 위반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을 부여하되, 시·도지사가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임.
- 개정안에 따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조사 및 시정권고가 가능하여 지역 사회 내 대규모유통업 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판단이 상이할 수 있어 법 집행의 일관성 및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에는 판례·심결 검토 및 경제 분석 등이 전제되는 경우가 많은데⁵⁾,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업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경우 판단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대법원은 동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서 요구되는 부당성에 대하여, 당사자가 처해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한 의도·경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요구의 태양, 제공이 요구된 정보의 내용과 범위, 경영정보 제공 요구를 받은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 받거나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행위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당사자 간의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요구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2017. 12. 22. 선고 2015두36010 판결).

-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대다수의 법률은 조사와 시정권고 권한에 대하여 현행법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서는 개정안과 같이 조사 및 시정권고의 권한을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 비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0, 88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2, 25의5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2의3, 34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9, 33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4, 27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7의2, 20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6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6, 31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43, 48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35, 38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성,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 및 시정조치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시·도지사에게 서면실태조사 권한 부여

□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30조(서면실태조사) ① <u>공정거래위원회</u> 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0조(서면실태조사) ① <u>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u> ----- ----- ----- ----- -----.
② <u>공정거래위원회</u> 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u>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u> ----- ----- ----- ----- ----- ----- -----.
③ <u>공정거래위원회</u> 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u>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u> -----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서면실태
조사 실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따른 경우 지역
사회 내 대규모유통업의 거래에 대한 현안 파악 및 대응책 마련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지사가 서면실태조사를 중복하여 실
시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⁶⁾, 시·도지사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현재도 가능하다는 점⁷⁾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현행법에 따르면 서면실태조사의 자료제출과 관련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제41조(과태료)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1.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

7)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제도를 총괄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시·도지사에게 고발 요청 권한 부여

- ☐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42조(고발) ① ~ ③ (생략)	제42조(고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u> 사회적 파급효과, 납품업자등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 ----- ----- --- <u>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도지사는</u> ----- ----- ----- -----.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기업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⁸⁾

8) 제42조(고발) ① 제39조제1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9조제1항의 죄 중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납품업자등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 고발요청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2011년) 당시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요청권이 있었으나 2013년에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까지 확대되었음.

○ 개정안은 고발 요청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발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납품업자 등의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의무고발 요청제도는 법상 고발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의무 고발 요청기관 고유의 정책적 견지¹⁰⁾에서 고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 고발하도록 하는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시·도지사까지 의무 고발 요청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경우, 1996년 법률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의무,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공소제기 후 고발 취소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2013년에는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까지 고발요청권을 확대되었으며, 고발요청권을 가진 해당 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 독점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왔음.

10) (중기부) 중소기업 피해, (조달청) 국가재정 영향, (감사원) 사회적 파급효과

문 의 처
02)6788-5114